

## II. 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 주요 내용

### 1. 회계부정 지시자(임원 및 실소유주)에 대한 시장 퇴출

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되어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,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**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**는 지적이 있었다. 아울러,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을 주도·지시한 회사관계자를 **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**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.

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,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**실질적 지시자(업무집행지시자)**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해임·면직 권고, 직무정지, 과징금 등과 함께 **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**.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,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. 참고로,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.

※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이 크게(약 7배) 증액된 만큼('25년 4.5억원 → '26년 31.7억원), 내부고발 등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

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한 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이미 재임중인 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**최대 1억원**(자본시장법상 조치수준과 동일)의 **과태료**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.

※ 美SEC에서는 불공정거래, 회계부정 등 증권 관련 사기행위자에 대해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금지 가능 → '24년 중 회계부정 관련 19명 제재

### 2.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

회계법인 간 **과도한 수입 경쟁**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**관리·감독을 강화**한다. 감사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꼼꼼히 살펴봐야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데, 시간을 과도하게 줄일 경우 감사 품질이 저하되어 회계부정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실제로, 최근 감사 투입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.

\* 상장사 평균감사투입시간: ('22) 2,458 ('23) 2,431 [△1.1%] ('24) 2,359 [△3.0%] ('25) 2,348 [△0.5%]

우선, 자본시장 성장,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**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**하고, **군 상향 특례 제도**를 도입하여 실력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를 연다.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**상위군**에게 허용된 **자산규모의 상장사**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. 다만,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.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.

※ (예) 나군 중 품질우수법인(①, ② 모두 충족)을 특례가군 지정 → 자산 2~5조원 회사 지정 허용  
 ① 품질평가 결과 가군 평균점수의 95% 이상 획득&나군 중 상위 20% 이내  
 ② 손해능력 나군 기준의 150% 이상

아울러, 감사인 점수 산정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(최대 10%) 외에 **감점(최대 △10%)**을 추가 신설하고, **군별 상대평가**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. 또한, 감사품질 평가결과에 따른 지정 점수 격차가 확대되는 만큼 그간 운영결과, 피감기업 의견,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반영\*하여 **품질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**을 높인다.

\* (예)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 여부, 감사품질 중심의 지정감사팀 구성·운영 여부, 수요자 관점의 평가결과(감사팀의 산업전문성·연속성, 긴밀한 소통 등)

## 5. 대형 회계법인,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

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감독기제를 마련한다. 그간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품질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품질 관리·감독기구 등 견제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, 대체로 외부전문가 참여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 **대형 회계법인(가군) 내에 독립적인(가칭)“감사품질 감독위원회” 설치·운영을 의무화**한다.

\*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 검토

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**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**로 구성해야 한다. 이들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, 관련 **주요 의사결정**을 사전에 **모니터링**하는 역할을 맡아 회계법인의 **공익적 내부 견제기구**로 기능하게 된다. 회계법인은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주요 활동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.

※ 英, 日 등도 회계법인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,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지배구조에 포함하고 운영성과 등을 공시하게 하며, IFIAR(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) 등도 관련 논의 진행 중